



학회용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 윤리 길잡이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한국연구재단



학회용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 윤리 길잡이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한국연구재단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문사회 분야 개별 학회에서는 이 책자를 참고하여 해당 학회의 출판윤리 수준을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발간 목적과 구성

05

01 학회 논문 관리 시스템

- | | |
|-----------|----|
| 1. 편집책임자 | 08 |
| 2. 저자 | 15 |
| 3. 저자 진술서 | 23 |

02 학회 연구윤리 규정(예시)

- | | |
|-----------------|----|
| 1. 논문 투고 규정(예시) | 26 |
| 2. 연구윤리 규정(예시) | 28 |

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무 길잡이

- | | |
|----------------------------|----|
| 1. 중복 게재 의심 논문에 대한 대응 | 36 |
| 2. 번역을 이용한 표절 의심 논문에 대한 대응 | 41 |
| 3. 연구 데이터 위변조 의심 논문에 대한 대응 | 44 |
| 4. 연구 과정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대응 | 45 |

부록

- | | |
|-------------------------------|----|
| 1. 학회 편집·심사자의 연구윤리 점검 리스트(예시) | 46 |
| 2. 저자의 연구윤리 점검 리스트(예시) | 47 |
| 3. 편집책임자의 편집 원칙(예시) | 48 |
| 참고문헌 | 54 |

발간 목적과 구성

한국의 인문사회 학술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들은 관행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집행된 교체와 함께 편집위원장이 교체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학회 및 학술지의 출판윤리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책자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편집책임자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출판윤리와 관련된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급속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책자에서는 그간 국내외 우수 학술단체에서 축적한 출판윤리와 관련된 여러 제안을 담고자 하였다.

본 책자는 과거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연구윤리 가이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논문 투고 및 심사, 출판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술지별 연구윤리 시스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문사회 분야 학문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출판윤리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회 논문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주체인 편집책임자를 중심으로 저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저자 진술서에 관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저자의 임의 변경이나 부정 저자 추가에 대한 이슈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문사회 주요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고 및 연구윤리 규정으로 세분화한 예시 규정을 각각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무 길잡이를 수록하였다. 중복 게재, 번역을 이용한 표절, 연구 데이터의 위변조, 연구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 등을 중심으로 편집·심사자가 어떻게 상황별로 대응하고, 연구부정행위 사항을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학술지별 연구윤리 규정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표준화된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로서 학회 편집·심사자의 연구윤리 점검 리스트와 저자의 연구윤리 점검 리스트를 수록하였다.

01

학회 논문 관리 시스템

-
1. 편집책임자
 2. 저자
 3. 저자 진술서

■ 권한과 역할

○ 편집책임자란?

-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을 총괄하여 지칭하는데, 편집책임자는 학술지에서 수석편집위원장, 부문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등을 통칭하여 관련 직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함

○ 일반적 권한

- 학술지 내용과 출판 시기 등 편집과 관련한 모든 권한 보유

○ 업무 범위

- 해당 학술지를 총괄하여 논문 품질 관리를 담당
- 논문 접수, 심사자 선정, 심사 진행, 최종 출판 여부 판단
- 편집책임자는 부편집책임자(편집위원, 편집간사 등)의 최종 출판 업무를 지원·지도함
- 논문 모집 공지, 최종 논문의 편집과 전자 인쇄 작업, 학회 홍보 업무 등도 담당함

○ 편집 원칙 준수

- 편집책임자는 편집의 자유 개념을 지지해야 하고, 각 학문 분야 학술지 정책에 적합한 최선의 논문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독립성 보장

- 논문의 심사, 평가, 게재 논문 선정, 출판 및 편집 등에서 독립성 보장

○ 업무의 분리

- 학술지의 상업적 측면은 학술지 소유자나 사무국이 담당하는 반면 편집책임자는 연구 가치, 창조성, 타당성, 학문에의 기여, 연구윤리 등의 결정을 담당

○ 책임 있는 비판 권한

- 학회 소유자와 재정 담당자 등에게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비판이 가능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학술지의 상업적 목적에서는 많은 논문을 심사하고 발간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연구윤리와 질적 관리 측면에서는 편집책임자는 논문의 심사를 엄격히 하고 발간(출판)되는 논문의 숫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판에 대한 고유 권한

- 학회 재정 부분과는 독립하여 학자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논문의 품질 관리와 관련한 학술지의 출판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 좋음
- 예를 들면 학술지 논문 주제 선정, 전반적 심사 과정과 출판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편집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중재자 역할

- 편집책임자는 저자, 전문가 심사자, 사무국 직원, 편집위원, 독자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구와 참여를 유도하는 지위에 있음. 따라서 학술지가 편집책임자에 대한 법적 소송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밀 유지의 의무

- 편집책임자는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밀은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 즉 심사자의 성명은 모두에게, 심사평은 투고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투고자의 성명과 원고의 기밀은 출판 전까지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홍보의 역할

- 편집책임자가 각종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에 학술지 논문의 모집 공고를 올리고 학술지에 대한 대중의 질문과 평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음

○ 편집위원회 관리

- 편집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학술지 출판 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음

■ 편집 원칙

○ 연구윤리 준수

- 학술지의 정책과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

○ 모범적 실천

- 모든 편집책임자와 심사자가 학회 규정을 모범적으로 실천

○ 출판물의 진실성 보장

- 출판물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중요한 공통적인 편집 정책,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편집책임자의 편집 원칙

- 아래에 소개된 8가지 편집 원칙은 Kleinert and Wager(2011)¹⁾가 제안하였으며, 이는 제2차 국제연구진실성회의에서 개발된 입장문(싱가포르, 2010년 7월 22일-24일)에 담긴 편집책임자의 편집 원칙을 정리한 것임

※ 상세 내용은 [부록3]의 '편집책임자의 편집 원칙' 참고

〈참고 1〉 책임 있는 연구 출판 : 편집인을 위한 국제 표준

제2차 국제연구진실성회의의 입장문(싱가포르, 2010년 7월 22일-24일)

발표자 : Sabine Kleinert and Elizabeth Wager

[개요]

- 편집인은 게재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편집인은 상업적 고려와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 편집인은 최대한의 투명성과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1) Kleinert, S., & Wager, E. (2011) Responsible research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 position statement developed at the 2nd 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Singapore, July 22-24, 2010. Chapter 51 in: Mayer, T., & Steneck, N. (eds)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in a Global Environment. Imperial College Press /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pp 317-328). (ISBN 978-981-4340-97-7)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한국연구재단 (pp 57-67), 2019년 8월에 발행한 번역서 재인용>

- 편집인은 필요할 때 정정 및 철회 기사를 발행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있는 사례를 추적하여 출판된 기록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 편집인은 최대한의 투명성과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편집인은 필요할 때 정정 및 철회 기사를 발행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있는 사례를 추적하여 출판된 기록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 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 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전문가 심사자와 저자에게 기대되는 바를 전달해야 한다.
-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충돌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2〉 한국일본어학회 연구윤리 규정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참고 3〉 한국상당학회 연구윤리 규정

「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제23조(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4조(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1.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 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 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 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28조(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29조(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 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이를 알린다.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참고 4〉 인간 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준수 확인

[개요]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연구 시작 전에 연구 대상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 기구

▶ IRB 심의 대상 논문 여부 확인

인문사회 분야 중 일부 학회 편집책임자는 연구자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지키며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 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미승인

관련 학회 편집책임자는 연구자가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고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그 사유와 함께 원고를 반려해야 함. 만약 승인 없이 논문이 게재되었다면 논문을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저자와 관련 기관(소속 기관, 연구지원기관 등)에 알리고 철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IRB 심의 대상 연구 판별]

▶ 적용 범위

인문사회 분야 일부 학문 분야의 경우 인간 대상 연구(사회과학, 관찰연구, 행동연구, 설문조사 등)에 대해 적용 가능성 검토

▶ 학문 분야

특히 사회과학 분야 중 인류학(Anthropology), 심리학 중 생물학적 심리학(Psychological Biology), 교육학과 교육학적 연구 (Education & Educational Research), 사회학(Sociology) 등이 관련 분야

▶ 인간 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 물리적으로 개입,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IRB 심의 면제 대상]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 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심의 면제 대상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는 심의 면제 대상

1. 약물 투여나 혈액채취 등의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2.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4.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연구 대상자가 불특정하며, 연구 대상자로부터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연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가 이미 생성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저자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결과보고서(황희 중, 한국유통과학회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2019)에 수록된 내용을 본 책자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자 자격

○ 투고 자격과 저자 자격

- 논문 투고 자격과 저자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학회와 학술지 발행 기관이 내부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저자의 책임

-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모든 저자에게 있으며, 해당 학술지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에 어긋난 경우는 학술지의 내규에 따라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음
- 학술지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저자에게 소명을 받아 재투고하여 정식 절차를 거친 경우 다음 호 해당 학술지에 재게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저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학회나 학술지는 저자 정보를 등록하여 저자의 소속이나 연락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음. 이때 저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이용해야 함

○ 저자 정보의 활용

- 저자 정보를 학회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심사 절차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저자의 요청 등에 따라 학회 실무자가 저자 정보를 활용할 때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이용 관련 사항을 학회의 규정으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저자권(Authorship)

○ 저자권의 의의

- 저자의 권리인 저자권(Authorship)은 대외적으로 저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의미를 가짐

(ICMJE의 견해) 저자권은 출판된 논문이나 작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함. 참고로 국제의학저널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는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 기여를 한 자들이 저자로서 공로를 인정받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여기에서는 저자로서 인정받은 투고자들이 출판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저자권의 역할

- 저자권을 주장하는 것은 저자로 지정된 사람이 해당 논문의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세계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

■ 저자권 분쟁 예방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저자에게 연구의 타당성을 질의하고 소통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 함. 이는 연구 결과의 은폐 혹은 조작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 저자들 사이의 분쟁 방지

- 부적절한 저자 표시는 연구팀 구성원들 사이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음. 즉, 한 그룹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지만, 그들 중 일부만 저자로 명시되고 나머지 기여자들이 배제된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함

○ 저자권 논쟁의 책임 주체

- 학술지 편집자는 저자 표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지 않음
- 편집자는 게재하는 논문이 철저하게 심사되었으며 게재된 논문의 연구가 타당한

출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임

- 저자권에 대한 책임을 편집자가 부담하면 논문을 승인하는 위험을 회피하게 하여 편집·심사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저자 지정 시 유의해야 할 점

○ COPE의 견해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는 저자권을 넓게 정의함. COPE는 “저자권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지만, 최소한 저자들은 연구의 특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음

○ ICMJE 견해

- “저자는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 ICMJE의 정의에 따른 저자권의 의의는 “논문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기여자를 저자로 명명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하는 데 있음
- 지적 또는 창조적인 측면에서 연구에 참여한 것이 단순히 실험에 참여한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봄. 예를 들어, 실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연구의 주제를 결정한 대학원생은 랩 테크니션(Lab Technician), 재정적 후원자 혹은 지도교수보다 저자권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인정받음
- “저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들은 저자권을 보유할 권리가 있고 저자 리스트에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 저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연구의 복잡성(complexity) 증가 및 학제 간 프로젝트(Interdisciplinary Project)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저자의 숫자는 현실적이어야 함. 즉, 수십 명 이상의 저자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음. 또한, 저자들을 너무 많이 나열하는 것은 저자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은 것과 동일한 효과임. 아무도 누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임

■ 논문 저자의 순서

- ♣ 저자 나열 순서에 대한 통일되고 강제된 규칙은 없음
- ♣ 일반적인 저자 순서 표기를 준수하기를 권장함

○ 저자를 나열하는 일반적인 방법

- (일반 원칙) 저자를 나열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공동저자 간의 공동 결정’이
어야 함
- (기여도 원칙)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논문 초안과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저자
가 제1저자가 되고 나머지는 기여도가 높은 순서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
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저자 순서를 알파벳 순서로 하거나 대표 저자를 마
지막 저자(Last Author)로 두는 경우도 있음

○ 제1저자 (First Author)

- 제1저자가 한 명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제 간 연구에서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음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Last Author)

- 교신저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위치함
- 마지막 저자(교신저자)가 여러 명이면 인쇄상의 기호와 각주를 통해 표시함
- 마지막 저자의 중요성이 등장한 배경은 공동 연구자 중에서 연구 내용과 해석을
검토하도록 요구받는 수석 연구자를 정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발생한 관
행에 있음
- 연구에서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이 된다면 논문의 진실성과 투명성에 대해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의미임

○ 공동저자

- 제1저자와 마지막 저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계 내에 통용되는 관행이 있지
만, 중간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 통용되는 관행이 없음

○ 저자 순서를 정하는 방법

- 저자 간 협의를 통해 순서를 결정함
- 연구자가 연구 과정 초기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미리 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음
- 저자 관련 사항에 대해 저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연구팀 구성의 변경 사항이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해당 연구진 목록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저자의 상대적 연공서열이 저자 목록의 순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당함. 관행적으로 동서양 모두 연공서열이 저자 목록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러한 일종의 '사회적 지위'가 공동저자 간의 계급을 나누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됨

○ 저자 순서를 정하는 시기

- 논문 작성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에게 논문 투고 전에 저자 명단 목록에 동의하도록 함. 즉, 어떤 순서로 저자 이름이 나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요구하는 편이 좋음
- 투고 전에는 저자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투고 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 순서나 역할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여러 이유로 사전에 저자 순서에 대해 규칙을 정하기는 여전히 어려움. 연구 과정 중에 기여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동의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할 수도 있음. 즉, 논문 작성 후의 관점에서는 사전에 정한 논문 기여 수준에 대해 공동저자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저자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자 나열 순서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 이외에 사후에도 변동 가능성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도 규정에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음

○ 저자 순서가 중요한 이유

- (주요 저자 등재 요구) 가능한 많은 출판물에서 주요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연구 업적물의 성과를 높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와 관련성이 있음
- (저자 순서와 기여도) 충분한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자권을 부여하면

부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실제로 업무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게 됨

- (다수의 공동 연구 증가 추세) 한두 명의 저자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연구 논문에는 여러 명의 저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즉, 합동 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할수록 논문 저자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저자가 소수인 경우

- 상대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또는 저자 이름 순서로 나열함

○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 똑같은 공헌도를 가정할 수는 없음
- 제1저자는 가시성이 높음. 이는 독자가 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이름이며, 다양한 인용 규칙으로 인해 해당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에서 제1저자만 주로 나타나기 때문임. 예를 들어, 텍스트 또는 서지 참조 규칙은 다른 모든 저자를 ‘et al.’로 줄여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독자는 제1저자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마지막 저자는 지도교수 혹은 연구책임자를 위한 자리임. 따라서 이 사람은 연구가 잘 진행될 때 신뢰를 높여주지만 일이 잘못될 때는 명예가 실추되게 됨. 마지막 저자는 교신저자, 즉 편집책임자가 연락하는 제1차 연락망임

■ 저자권에 대한 적용 유형

○ 윤리 기준 선언적 제시형

- 학술지에서 저자 표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
- 예를 들어 국제 경영 및 전략 분야의 탑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서술하는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THE JOURNALS CODE OF ETHICS 중 Co-authorship 부분 요약〉

- (1) 공동저자들은 논문 작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함
- (2) 다양한 부분에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Authorship과 Credit이 공유되어야 함
- (3)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반면 자연과학 분야는 대단위의 공동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저자권(Authorship) 관련 기준이 명확하고 각 저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공동 연구라 할지라도 2~4명 정도의 소단위의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연과학 분야에서처럼 저자 진술서(Authorship Statement)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까지 각 저자들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저자 진술서 제출형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저자 진술서(Authorship Statement)를 요구하는 형태는 출판사에서 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Springer, Elsevier 등은 Authorship Form, Authorship Disclosure Form, Author Contributions Form 등의 형태로 저자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논문 저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음.

〈참고 5〉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 규정

「연구자의 연구윤리」

- 4.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은 공동저자들이 상의해서 적절히 정한다.
- 5. 연구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 결과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을 모두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명기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 6〉 한국상당학회 연구윤리 규정

「저자의 책임과 의무」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 ②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공동 저자, 감사의 글,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여에 합당하게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해야 하며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 ⑤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⑥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학술지 게재를 허가한 후 '저자 추가' 또는 '저자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저자 진술서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결과보고서(황희중, 한국유통과학회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2019)에 수록된 내용을 본 책자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자 진술서의 기능

- 논문 투고 시 작성하는 것으로서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저자의 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저자가 포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실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도록 논문 투고 시에 실증 분석 데이터 및 이미지 파일 등 원본 자료 제출 의무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책임 소재를 확정하기 위한 것임
- 논문 편집·심사 과정에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번역을 이용한 표절, 논문 유사도 회피 목적의 인용과 각주 표시를 통한 부적절한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학회 특성과 판단에 따라 저자 진술서에 담는 것이 가능함

○ 적용의 유연성

- 저자 자격 기준의 강도를 해당 분야의 학술적 환경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7〉 저자 진술서 예시

[1단계]

	(1)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2)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또는 기본 원고 작성	(3)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개정	(4)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 또는 진행관리	전체 기여도 (100%)
	40%	20%	20%	20%	
저자 A	15%	4%	3%	2%	24%
저자 B	5%	4%	4%	2%	15%
저자 C	5%	4%	3%	2%	14%
저자 D	5%	4%	5%	4%	18%
저자 E	10%	4%	5%	10%	29%

[2단계]

연구윤리 항목	내용 예시	저자 서명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는 저자 A, 교신저자는 저자 E,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 저자 D 임을 확인합니다.	저자A: 저자B: 저자C: 저자D: 저자E:
표절 및 중복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저자A: 저자C: 저자C: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저자E: 저자C: 저자E:
실증분석 연구부정행위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를 제출하였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저자A: 저자C:
기타 연구부정행위 방지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한 선행 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E가 보완하였습니다.	저자A: 저자E:

02

학회 연구윤리 규정(예시)

-
1. 논문 투고 규정(예시)
 2. 연구윤리 규정(예시)

1 논문 투고 규정(예시)

- 연구윤리와 연관성이 높은 논문 투고 규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학술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학회 논문 투고 규정 (예시)

제1조 (투고자의 의무)

1.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고,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모든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 투고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에 어긋난 경우는 내규에 따라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게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문제 소지가 해소된 경우 재투고하여 정식 절차를 거친 경우 다음 호 해당 학술지에 재게재가 가능하다.

제2조 (학술지 성격과 연구윤리 적용)

익명의 ○인의 심사자를 통과한 경우(1단계 중간 심사 결과)라 하더라도 최종 편집위원장 검토 단계(2단계 최종 심사 결과)에서 학술지 성격과 불일치하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 거절 판단이 가능하다.

제3조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표절 및 유사도를 세밀하게 검사하기를 권장한다. 일반적인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세밀한 검사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정밀한 상세 검사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중복 게재 또는 논문 표절로 인한 문제가 사전 또는 사후에 발견된 경우, 논문의 투고(작성)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ISSN, eISSN, ISBN 번호가 미 부여된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인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철회)

1. 접수된 후 심사 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혹은 Email로 철회를 요청한다.

제5조 (출판 후 논문 내용 수정)

1. 출판 이후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실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다르게 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거나 학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내 기술된 부분(사사표기, 인적사항 부분, 본문 내용 등)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케 한 후 수정할 수 있다.

○ 인문사회 학술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학회 연구윤리 규정 (예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이 편집 방침에 의하여 접수되고 심사되는 논문에 있어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자의 윤리적 덕목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자신의 연구를 중복 게재하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표절 행위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투고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3. 실험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요 실험을 직접 수행한 연구자는 제1저자이어야 하고, 논문 작성을 책임지고 연구와 교신을 진행하는 연구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기타의 역할을 담당한 연구자를 공동저자로 나누어 공평하게 기여도를 배분해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조직)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판정)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여부와 그 책임자 및 부정의 정도·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5.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에서 맡는다.
6.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판정은 본 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당해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8. 연구부정행위 판정 기한은 ○개월로 한다. 즉, 연구부정행위 제보나 학회 자체 발견 이후 예비조사, 위원회 소집 후 본조사 및 판정까지 기한을 말한다. 피의자는 이의신청을 ○○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개월 검증 시효 기간 안에 완료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1. 연구부정행위는 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고의성: 알면서 저지른 고의적 행위인지
 - 2) 목적성: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 3) 무모성: 연구자 집단에서 볼 때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
 - 4) 반복성: 반복적으로 행한 것인지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정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게재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본 위원회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게재를 보류한다.
2. 기 게재된 논문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해당 학술지에서 삭제하고, 해당 연구자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이후에는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한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 혐의로 최종 판정을 받는 자는 ○년간 학회원에서 강제 탈퇴되며,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게재를 못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4.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년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본 위원회 의결과 동시에 연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조속히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또한,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한다.
6.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8〉 가정과삶의질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8조(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후속 조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보 및 접수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접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1.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의심되었을 때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한다.
2. 접수는 [가정과삶의질학회] 편집위원회에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3. 접수 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고 반드시 비밀 보장이 되도록 한다.

조사 및 소명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2.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 과정 없이 의결한다.
3.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해당 연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명예와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결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결정 통보 및 이의 제기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 통보 및 이의 제기 방법은 각항과 같다.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후속 조치 -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연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1. 본 학회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중복 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드는 제반 비용을 해당 연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자는 향후 최소 3년 이상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참고 9〉 한국교육치료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의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범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투고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1.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등 편집국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표절 검사 표절률이 15%를 상회하는 논문
2. 본회 투고 규정의 제출 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맞춤법 및 번역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
3. 투고자 본인의 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별도 표기 없이 투고한 논문. 다만 학위 논문을 요약했다는 내용의 주석이나 본문 각주가 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함
4. 가족(부모, 자녀, 부부 등)이 공저한 논문. 다만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5. 다른 사람의 연구보고서나 학위 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

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무 길잡이

-
1. 중복 게재 의심 논문에 대한 대응
 2. 번역을 이용한 표절 의심 논문에 대한 대응
 3. 연구 데이터 위변조 의심 논문에 대한 대응
 4. 연구 과정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대응

- 연구자들은 논문 작성 시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꾸준히 발전시키게 되므로 기존 자신의 연구 업적물을 부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함
- 본인의 논문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인용이나 각주 표시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중복 게재에 해당하고,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려는 고의로 추정되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수 있음
- 본인의 논문을 인용 표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분류될 수 있음
 - 저자가 본인 논문의 인용 사실을 각주로 표시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할 경우
 - 새로운 창작물이 기존 연구물의 일부를 형식적으로만 변경하여 내용적으로는 같을 경우

〈참고 10〉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윤리 규정

「이중 출판」

4. “이중 출판”은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관련된 기 출판된(심사 중인 논문 포함) 연구 결과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 1) 연구자 자신이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한 경우, 이중 출판으로 간주한다.
 - 2) 학술지 논문으로 기 발표된 결과들을 모아 저서를 출판하는 경우는 이중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 내용을 일반지, 대중 잡지 등에 풀어쓴 것은 이중 출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드시 원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 4)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 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본 학회 편집위원장과 해당 외국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사전 고지와 동의가 있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참고 11〉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윤리 규정

「중복 게재」

5. “중복 게재”는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관련된 기 출판된(심사 중인 논문 포함) 연구 결과 및 연구 도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를 말한다.

- 1)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2편 이상의 논문이 중복 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다른 저널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관련 논문이 있을 때는 두고 시 반드시 사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3) 하나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복수의 연구물을 생산하는 행위 또는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타당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출판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나 학제 간 연구의 경우 필요하다면 복수의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연구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자는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참고 12〉 한국국제통상학회 연구윤리 규정

「중복 출판 또는 이중 게재」

제6항. “중복 출판 또는 이중 게재(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는 이미 출판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출판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덧붙이기 출판, 분할 출판, 자기표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① “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은 표본이나 연구 대상을 추가하여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분할 출판(salami publication)”은 같은 표본이나 연구 대상으로 다른 결론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인용 없이 새로 출간하는 논문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의 사용

○ 유사도 검사 결과의 해석

- 투고자 논문을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검사할 경우 투고자 본인의 연구물과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은 어절과 단어의 일치율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문헌 비교를 하므로 투고자는 어미를 바꾼다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당 수치를 낮출 수 있음
- 즉,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유사도는 참고용이므로, 편집·심사자가 문맥과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유사도 검사 권장 기준

- 유사도 검사의 권장 기준은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사도 검사 권장 기준 설정(예시): 유사도는 4~6어절 이상 일치율을 기준으로 인용이나 서지사항 중복을 제외하고 5~15% 이하이어야 함

-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학술지의 판권 등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유사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역시 편집·심사자가 형식적인 판단만을 해서는 안 됨
- 유사도 수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학문 분야 특성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편집·심사자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관련 원고의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분석 결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므로 주의해야 함
-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학위 논문에서 발췌했음을 서지정보로 표기하였느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공저자에 제3저자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함
- 연구자 본인 논문의 인용과 출처 표시 방식에 대한 용례를 학술지 심사 기준으로 서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의 분석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구윤리 판단은 해당 문장과 문단별로 편집·심사자가 논문을 검토하면서 판단해야 함

- 또한 연구자가 영어와 한국어 등 언어를 달리하여 논문을 출판할 경우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으므로 직접 편집·심사자가 눈으로 비교 확인해야 함

〈참고 13〉 한국법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논문 유사도 검사」

제 3조 (인용 및 참고표기)

3.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과 같은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다.
 - 1) 국내 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카피킬러(<https://lite.copykiller.co.kr>)를 활용해 문서 표절률이 15% 이상인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 2) 외국에서 투고하는 논문이나 외국 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턴잇인(<http://www.turnitin.com>, <http://www.turnitin.com/ko>)을 활용해 논문 유사도가 20% 이상인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 학문적 시사점이나 공헌이 없는 논문 배제

- 유사도 검사 결과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투고자의 이전 연구에 비해 전혀 발전된 점이 없는 논문, 연구 가설과 모형에 큰 변화가 없는 논문, 본인의 논문을 상당수 인용하면서 반복적인 논증을 하는 논문, 기존 학위 논문을 2개 이상의 연구로 쪼개서 제출한 논문 등은 편집책임자와 심사자가 철저히 걸러내야 함
-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편집책임자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학문적 기여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출판을 보류해야 함

〈투고자의 기존 연구와 비교 방법(예시)〉

투고자의 기존 연구 목록을 연구자 정보나 구글 학술검색 등을 통해 확보한 이후 제목, 키워드, 초록, 참고 문헌, 표와 그림, 연구 모형과 가설을 중심으로 비교해 봄. 특히 연구자의 가장 최신 논문과 학위 논문 등을 중심으로 일대일 비교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 기존 본인 연구와 유사한 논문 상세 점검

○ 주요 이슈

- 실증 분석 연구의 경우 통계 결과값(계량적 데이터)만 바꾸고 사용할 경우, 즉 연구자의 문장 작성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중복 게재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글의 형식이 같더라도 연구 주제가 다르면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 게 일반적임

○ 편집·심사자의 대응

- 특정 개념과 변수만 변경하여 작성되었거나, 기존 연구와 분석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집·심사자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 저자에게 계량적 데이터나 수치는 가급적 표로 작성하여 보여주고 그 시사점이나 의미 위주로 서술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좋음
- 저자에게 관용적 표현이나 관련 학문 분야에서 매우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언급은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음

〈참고 14〉 한국관세학회 연구윤리 규정

「연구 진실성 검증」

제5조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 및 평가 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 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1. 모든 연구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 방법과 통계 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적발의 어려움

- 표절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투고할 경우 편집·심사자가 발견하기 어려움

〈주요 사례〉

1. 한국어로 된 논문을 영어로 바꾸어 투고하거나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투고할 경우 번역의 다양한 결과로 인해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2. A언어의 논문을 B언어로 번역한 뒤 이를 다시 C 또는 A언어의 논문으로 번역하여 투고한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음

○ 편집·심사자의 대응

- 편집·심사자가 논문을 이해하고 투고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함

※ 대개의 경우 번역된 본문에 비문이 많거나, 본문 각주, 표나 그림의 출처 표기가 어색할 경우 번역을 이용한 표절을 의심해 볼 수 있음

〈참고 15〉 한국청소년학회 연구윤리 규정

「저작과 단순 번역」

- (3) 도서의 출판 시 외국인의 저작물을 단순히 번역하거나 요약한 내용을 수 쪽 이상 담고 있을 경우에는 '지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엮음' 또는 '옮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외국 도서의 번역 부분인지 글자체나 글자 크기의 차별화 등을 통해 독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16〉 한국언어연구학회 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범위」

4. “이중 출판”은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관련된 기 출판된(심사 중인 논문 포함) 연구 결과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 1) 연구자 자신이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한 경우, 이중 출판으로 간주한다.
 - 4)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 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본 학회 편집위원장과 해당 외국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사전 고지와 동의가 있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심사

○ 영어로의 번역 표절의 경우

- 편집·심사자로서는 한국어로 제출된 논문보다 영어로 제출된 논문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번역의 과정을 거친 영어 기반의 논문은 해외 논문과 유사도 비교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입하여 심사하여야 함

○ 대처 방안

- 논문의 제목, 키워드, 본문의 주요 용어, 가설과 연구 모형의 형태 등을 참조하여 수작업으로 임의의 학술 데이터 전체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 적발된 경우

- 해당 투고자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향후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함
- ※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연구부정행위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심사할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예외 사항

- 다양한 언어로의 출판이 연구 목적과 학문 분야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참고 17〉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번역 관련 중복 게재」

5.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 한다.

■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논문의 심사

○ 번역 표절이 의심될 경우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면서 투고된 논문을 분석해야 함

〈번역 표절 의심 논문 심사 방법(예시)〉

1. 심사 대상 논문과 표절의 대상이 된 논문의 언어를 일치시킨 뒤 비교
2. 가장 간편한 방법은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참고 문헌을 비교하여 유사도(표절)를 가능한 뒤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전체 논문의 본문을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벌 번역을 한 뒤 번역된 논문을 가지고 유사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를 함
3.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일치한다든지, 사용된 데이터(표본)가 유사할 경우 본문을 번역하여 볼 필요성이 증가함
4. 본문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핵심이 되는 문장, 즉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요약하거나 연구자의 제안을 담은 문장 하나를 발췌하여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다른 논문에도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5. 중복 게재와 번역 표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의 논문을 연구자가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에 한정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3 연구 데이터 위변조 의심 논문에 대한 대응

○ 주요 이슈

- 사례 연구나 현장 경험을 이론화한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 방법이나 연구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부정이 종종 발생함

〈주요 사례〉

1. 실험과 실증 분석을 수행하는 학문 분야의 경우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경한 논문
2. 존재하지 않은 사례나 타인의 경험을 연구자의 것으로 위장하여 작성하는 논문
3.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수행한 것처럼 통계 결과값을 모두 위조한 논문

○ 편집·심사자의 대응

- 연구 결과가 부자연스럽거나 인위적인 면이 없는지 연구자를 상대로 확인함
- 연구 대상과 환경을 조작하였는지 연구자를 상대로 확인함
- 연구자가 실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연구자를 상대로 확인함

〈편집·심사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

학문 분야마다 하나의 연구 성과물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함

1. 만약 어떤 학문 분야에서 일 년에 한 편의 연구 성과물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데, 일 년에 수십 편의 연구 성과물을 한 명의 연구자가 계속 생산해 낸다면 특이한 경우로서 주시해야 함
2. 하나의 학술지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에 대해 편집·심사자로서는 신중하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공동 연구가 적합한 분야에서 단독 연구로만 성과물을 양산하는 것도 검토 대상임
4. 편집·심사자는 저자의 숫자 의미를 파악해야 함. 즉 공동 연구는 저자별 연구 기여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저자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을 확인하는 것임
5. 공동저자들의 역할 분담과 기여도에 대해 저자 진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함

○ 연구 과정의 중요성

- 연구노트 또는 데이터 자료를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권장해야 함

※ 인문사회 학문 분야에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문사회 분야도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은 존재하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 기록을 관리해야 함

○ 입증 과정의 제도화

- 논문 저자가 직접 논문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순한 의심이나 임의 지정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그 확인 과정을 심사 절차에 포함시켜 제도화해야 함

설문 조사나 양적 자료를 활용한 논문	1. 통계 등 데이터 분석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논문과 함께 첨부하는 방안 2. 심사자의 논문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안도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을 강구함. 예를 들면 통계 프로그램 출력 결과물을 그림 파일 그대로 첨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가능 3. 표와 그림의 연구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 원고 작성 단계의 원형을 보여줌으로써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함 4. 실험 결과값 통계 수치만을 간략히 제시하고 전체적인 표 형태로 제시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본문에 표로 제시하도록 유도
정성적 연구, 문헌 중심의 연구, 사례 중심의 논문	1. 참고한 자료 또는 인용 및 발췌한 본문을 목록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2. 연구자의 컴퓨터 폴더에 보관된 자료와 저장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안 3. 연구 과정을 기록한 일지나 회의록, 자문을 위해 참석한 대상자의 서명이 기재된 회의 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안

○ 편집·심사자의 조사 요구에 대해 비협조하는 경우

- 해당 연구자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 록

1. 학회 편집·심사자 연구윤리 점검 리스트 (예시)

구분	점검 사항	질문	예	아니오
연구윤리 준수 위한 규정 적용	규정 적용 가능성	• 연구윤리 관련 학회 규정이 연구윤리에 대한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는가?		
	회원 공지	• 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회원 및 투고자가 인지하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연구 부정행위 예방	표절 검사	• 논문의 유사도 검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가?		
	저자권	• 투고자들에게 저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가?		
논문의 심사	심사 가능 논문 선별	• 해당 논문 주제가 학술지 성격과 일치하는가?		
		• 해당 논문이 학술지 편집 양식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교정이 필요 없을 만큼 문맥이 완벽하게 이해 가능한가?		
		• 표·그림 본문 인용(출처) 표시, 참고 문헌 표기 등이 완벽한가?		
		• 저자가 해당 논문을 작성한 것이 맞는가?		
	심사자 선정	• 저자의 이름 또는 저자를 추정할 만한 표기가 삭제되었는가?		
		• 해당 논문의 전공영역과 일치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을 하였는가?		
		•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의 소속 기관이 다른가?		
	논문 발송 및 심사	• 심사자에게 정해진 기일 안에 심사 논문을 발송하였는가?		
		• 심사 결과의 판정 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였는가?		
	심사 및 결과 처리	• 심사자가 심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 심사 결과가 평가 항목별 조건을 충족하는가?		
		•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였는가?		
		• 수정된 원고가 심사 결과를 잘 반영하는지 점검하였는가?		
	심사 결과 통보 및 게재	• 심사 합산 결과를 판정 기준에 맞게 통보하였는가?		
		• 편집·심사자가 연관된 논문의 경우 공정한 절차를 지켰는가?		
심사자 명단 관리	심사자 명부 확보	• 심사자가 해당 논문의 전공과 일치하는가?		
		• 심사 업무에 협조적인 심사자 명부를 별도 확보했는가?		

2. 저자의 연구윤리 점검 리스트 (예시)

구분	점검 사항	질문	예	아니오
연구윤리 준수 위한 규정 적용	연구윤리 규정 확인	• 연구윤리 관련 학회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였는가?		
	서약 제출	• 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는가?		
연구 부정행위 예방	표절 검사	• 논문의 유사도 검사 이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가?		
	저자권	• 공저자 합의하에 저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는가?		
논문의 심사	편집양식 준수 확인	• 해당 논문 주제가 학술지 성격과 일치하는가?		
		• 해당 논문이 학술지 편집 양식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교정이 필요 없을 만큼 문맥이 완벽하게 이해 가능한가?		
		• 표·그림·본문 인용(출처) 표시, 참고 문헌 표기 등이 완벽한가?		
		• 저자와 타인 견해나 자료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가?		
	투고 절차 준수 확인	• 저자의 이름 또는 저자를 추정할 만한 표기를 삭제하였는가?		
		• 교신저자는 온라인 투고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소속을 바르게 표기했는가?		
		• 추천 또는 배제를 원하는 심사위원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논문 투고	• 투고할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편집책임자 또는 심사자로부터 투고 기한 준수 요구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였는가?		
	심사 결과 대응	• 편집책임자 또는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를 성실히 수정하였는가?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회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편집·심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논문 게재	출판 과정 점검	• 게재 확정 후 출판 과정에서 협조 요청에 성실히 대응했는가?		
		• 사사표기나 연구에 도움을 준 대상에 대해 성실히 밝혔는가?		
		• 학위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논문 등 저자의 과거 연구 성과물과 관련성을 정직하게 밝혔는가?		
		• 저자명과 저자 정보의 내용이 충실한가?		

3. 편집책임자의 편집 원칙 (예시)

제2차 국제연구진실성회의 입장문(싱가포르, 2010년 7월 22일~24일)

[출처] Kleinert, S., & Wager, E. (2011) Responsible research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 position statement developed at the 2nd 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Singapore, July 22–24, 2010. Chapter 51 in: Mayer, T., & Steneck, N. (eds)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in a Global Environment. Imperial College Press /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pp 317–328). (ISBN 978-981-4340-97-7)

(1) 학술지 내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

- ▶ 편집책임자는 출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짐
- ▶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 자료의 질을 보장하며 출판된 기록의 진실성을 유지함

(2) 편집의 독립과 진실성

- ▶ 편집의 독립과 진실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공정하며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하기 위함임

(2.1) 의사 결정과 상업적 고려 사항의 분리

- └ 편집책임자는 학문적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전적인 책임을 짐
- └ 편집책임자는 학술지 내의 상업 활동을 편집 과정 및 결정에서 분리하는 업무 담당
- └ 편집책임자는 자료의 폭넓은 접근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논문뿐만 아니라 부록이나 학술지 후원 광고 등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함. 즉 후원 내역과 후원자의 역할을 분명히 공개함으로써 부록이나 광고가 논문의 내용과 구분되도록 함

(2.2) 학술지 출판사 또는 학술기관의 학회장 등 소유자와의 관계

- └ 편집책임자는 서면 계약을 통해 학술지 출판사 또는 학술기관의 학회장 등 소유자와의 임명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함
- └ 편집의 독립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함
- └ 학술지 출판사와 학술기관의 학회장 등 소유자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학술지 내용의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됨
- └ 출판사는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편집책임자의 결정이 학술지의 학문적 목적을 위배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편집책임자를 해임해서는 안 됨

(2.3) 학술지 지표(metrics) 및 의사 결정

- └ 편집책임자는 학술지 지표를 인위적으로 늘려 학술지의 순위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 예를 들어, 순수한 학술적 이유를 제외하고 해당 학술지의 논문이나 특정 출판물을 인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편집책임자의 기밀 유지

(3.1) 저자의 자료

- └ 편집책임자는 저자의 자료 기밀을 보호하고 심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
- └ 일반적으로 편집책임자는 저자의 동의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고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의 편집책임자와 공유해서는 안 됨
- └ 편집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위해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다만 부정행위 조사의 경우, 제3자(기관 조사위원회 또는 타 편집책임자 등)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음
- └ 편집책임자는 저자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논문의 심사 상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3.2) 심사자의 보호

- └ 편집책임자는 공개 전문가 심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한 심사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함
- └ 다만, 심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함. 또한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된 경우 심사자의 이름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

(4) 최대한의 투명성과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

- ▶ 왜 특정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지식에 투고자의 연구가 무엇을 추가하여 제안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 이러한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고 정직한 보고가 중요함

(4.1) 저자됨과 책임

- └ 학술지는 관련 분야의 표준에 따라 저자됨에 관한 분명한 정책을 가져야 함
- └ 저자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두고 규정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해당 분야 내에서 서로 다른 저자됨에 대한 협약이 있는 경우 어떤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명시함
- └ 다학제 및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누가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누가 연구의 어떤 측면에 대해 연구 수행과 타당성의 책임을 지는지 독자들에게 분명히 해야 함. 연구 각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저자가 적어도 한 명씩 있으면 좋음
- └ 예를 들어, 기여란에 개별적 기여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이상적으로 모

든 저자는 논문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학술지에 제출된 저자 진술서에 명시할 수 있음

- ㄴ 적절한 이유로 명백히 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책임자는 모든 저자(저자 목록에서 삭제될 사람을 포함)가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함
- ㄴ 저자됨의 분쟁(즉, 출판 전후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며 누가 저자가 되지 않아야 할지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은 편집책임자가 판결할 수 없으며 논문의 게재 여부, 심사 단계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 또는 다른 적절한 독립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함. 편집책임자는 이 결과에 따라야 하며, 예를 들어 게재된 논문에서 저자를 정정해야 함
- ㄴ 학술지는 편집책임자 혹은 편집위원회 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공개적으로 선언한 정책을 마련함

(4.2) 이해충돌과 연구비 지원 공개

- 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상황”임
- ㄴ 특히 학문 분야에서 이해충돌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문 또는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연구에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큼
- ㄴ 이해충돌은 크게 재정적 이해충돌과 인적 이해충돌이 있음
- ㄴ 재정적 이해충돌은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ㄴ 인적 이해충돌은 투고자나 심사자가 학회장, 편집책임자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제 관계 등 친분이 있는 경우를 말함
- ㄴ 따라서 모든 저자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또한 연구비 출처를 공개하고 게재하도록 해야 함. 연구의 계획, 수행, 분석과 보고에 대한 연구비 지원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게재하도록 함

(4.3)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 및 보고 지침의 준수

- ㄴ 학술 문헌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학술지 간에 표준이 다를 수 있으나, 발행된 모든 논문이 해당 분야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
- ㄴ 소위 ‘분절 출판(salami publication)’(즉, 출판 가능한 최소한의 연구 단위로 출판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복 출판을 피해야 함
- ㄴ 논문의 학문적 기여를 밝히도록 권장함. 즉, 왜 이 연구가 필요하고 수행되어야 하는지, 이 연구가 기여한 바는 무엇이며 혹은 왜 이전 연구의 재현이 필요했는지, 또한 독자들이 이 연구에서 얻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명시하도록 지도함

- ㄱ 학술지는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관련 연구의 진실성을 준수한다는 증거로서 연구 과정의 증거 자료(높은 해상도를 갖춘 가독성을 고려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그림 및 표의 출처나 작성 과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ㄴ 연구 과정의 증거물은 편집책임자, 심사자 및 독자가 연구의 실제 수행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
- ㄷ 유사도 검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표절이나 중복 출판 검사, 혹은 이미지 조작에 대한 검사를 고려할 수 있음. 만약 표절 혹은 부정한 이미지 조작이 발견되면 관련기관을 통해 이를 추적할 수 있음

(5) 비판과 우려에 대한 대응

- ▶ 비판적 반응과 대응은 학문적 토론으로서 일반적으로 권장함. 비판은 연구 또는 출판 진실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

(5.1) 발표된 기록의 진실성 보장 - 정정

- ㄱ 연구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오류는 지적하여 수정되어야 함. 이때 가능한 한 빨리 정정 기사(혹은 정오표)를 게재해야 함
- ㄴ 논문의 온라인 버전은 정정 날짜와 게재된 정오표에 대한 링크로 수정될 수 있음
- ㄷ 만약 오류로 인해 연구 혹은 그 상당 부분이 무효화 될 경우 논문을 철회하고 철회 사유(즉, 정직한 오류)를 설명해야 함

(5.2) 발표된 기록의 진실성 보장 - 연구 또는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ㄱ 독자, 심사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학술 활동의 수행, 타당성, 혹은 보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책임자는 먼저 저자들(이상적으로 모든 저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ㄴ 조사가 완료되면 편집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게재해야 함
- ㄷ 편집책임자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확신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국가 기관이 권고하지 않더라도 논문 철회를 결정할 수 있음
- ㄸ 편집책임자는 독자, 심사자 또는 타 편집책임자가 제기한 연구 또는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제보나 의혹에 답변해야 함
- ㄹ 편집책임자는 출판물 윤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가지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할 때마다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함
- ㄺ 표절이나 중복 출판의 경우 편집책임자가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음

- 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저자의 해명을 먼저 구하고 만약 그 해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적절한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ㄴ 철회된 논문은 온라인에 보관되어야 하며, 모든 온라인 출판물 버전에 철회(Retraction)되었음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6) 공정하고 적절한 전문가 심사 절차의 보장

- ▶ 편집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전문가 심사를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직하고 활용하는 것임
- ▶ 편집책임자는 투고 규정에서 전문가 심사 절차를 설명하고 학술지의 어느 부분이 전문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표시해야 함

(6.1) 심사 여부의 결정

- ㄴ 심사는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ㄴ 편집책임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거나 품질이 낮은 논문은 전문가 심사 없이 논문을 거절 또는 반려할 수 있음. 다만 판단의 근거와 사용된 기준도 명시되어야 함
- ㄴ 편집책임자의 논문 거절이나 반려 결정은 논문의 학술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저자 또는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

(6.2) 전문가 심사자와의 관계

- ㄴ 편집책임자는 출판에 고려 중인 논문에 적합한 전문가 심사자를 활용해야 함
- ㄴ 전문가 심사자는 충분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서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선택해야 함
- ㄴ 편집책임자는 심사가 시의적절하게 회신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ㄴ 심사자들이 연구 및 출판 윤리 문제(즉,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고 보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표절, 위조, 변조 또는 중복출판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해야 함
- ㄴ 편집책임자는 이해충돌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심사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야 함. 만일 특정 이해충돌이 있으면 심사자를 제외할 수 있음
- ㄴ 편집책임자는 심사자에게 자료의 기밀 유지를 강조해야 함
- ㄴ 편집책임자는 전문가 심사의 품질과 적시성을 감독하며 심사자의 질문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함

(6.3) 심사자의 부정행위

- ㄴ 편집책임자는 심사자의 부정행위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함
- ㄴ 심사자의 기밀 유지 위반, 이해충돌의 공개 위반, 기밀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 심사의 의도적 지연에 대해 대처해야 함
- ㄴ 심사자가 심사 논문을 표절하는 등의 중대한 심사자 부정행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함

(6.4) 저자와의 상호작용

- ↳ 학술지 정책에 따라 전문가 심사자를 자문으로 간주하여 게재 승인 혹은 거절에 대한 심사자의 권고를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
- ↳ 편집책임자의 소통은 대개 교신저자와 이루어지나, 교신저자는 모든 단계에서 공동 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 편집책임자는 논문이 처음 투고할 때 그리고 최종 승인 단계에서 모든 저자와 연락을 함으로써 저자들이 투고 내역을 인지하고 게재를 승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 편집책임자는 모든 심사자의 의견을 온전히 전달해야 함.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비방이나 모욕적 발언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해야 할 수도 있음
- ↳ 심사 과정의 후반부에서 추가 심사자가 요구된다면 충분한 사유와 함께 저자에게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전달함
- ↳ 최종 편집 결정과 그 이유는 저자와 심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함
- ↳ 만약 논문이 거절되는 경우, 편집책임자는 재심사 절차를 저자에게 알려줄 수 있음

(7) 편집에서의 의사 결정

- ▶ 편집책임자는 논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음
- ▶ 가능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술지의 학문적 비전과 일치하도록 함

(7.1) 편집과 학술지의 절차

- ↳ 모든 편집 절차를 투고 규정에 명확하게 제시함. 특히, 저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형의 논문들이 출판되는지, 학술지에서 논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명시함
- ↳ 편집책임자는 학술지의 정책과 목적, 범위를 완전히 숙지해야 함.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편집위원장에게 있음

(7.2) 편집과 이해충돌

- ↳ 편집책임자는 자신과 이해충돌이 있는 논문에 대한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됨
- ↳ 편집책임자와 저자가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거나, 저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혹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저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포함됨
- ↳ 학술지에는 이해충돌의 경우를 다루기 위한 뚜렷한 절차를 마련함
- ↳ 학술지는 편집책임자나 편집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논문을 편향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투고규정에 명시함

참고문헌

- Clement, T. (2014). Authorship Matrix: A Rational Approach to Quantify Individual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Multi-Author Scientific Article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20(2), 345-361.
- Hwang, H. J., Kim, D. H., Youn, M. K., Lee, J. W., & Lee, J. W. (2014). The Standard of Judgment on Plagiarism in Research Ethics and the Guideline of Global Journals for KODISA.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2(6), 1520. <http://dx.doi.org/10.15722/jds.12.6.201406.15>
- Hwang, H. J., Lee, J. H., Lee, J. W., Kim, Y. E., Yang, H. C., Youn, M. K., & Kim, D. H. (2015). Strengthening Publication Ethics for KODISA Journals: Learning from the Cases of Plagiarism.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3(4), 5-8. <http://dx.doi.org/10.15722/jds.13.4.201504.5>
- Hwang, H. J., & Youn, M. K. (2016). Based on Proven Practices in Violation of Research Ethics for the KODISA Journa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7(1), 5-10. <https://doi.org/10.13106/ijidb.2016.vol7.no1.5>
- Hwang, H. J., & Chae, S. J. (2017). Research Ethics of Plagiarism of Adult Learners.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5(3), 41-47. doi: <http://dx.doi.org/10.20498/eajbe.2017.5.3.41>
- Hwang, H. J., Lee, J. W., Kim, D. H., Shin, D. J., Kim, B. G., Kim, T. J., Lee, Y. K., Kim, W. K., & Youn, M. K. (2017). Cases of Ethical Violation in Research Publications: Through Editorial Decision Making Proces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5(5), 49-52. <http://dx.doi.org/10.15722/jds.15.5.201705.49>
- Hwang, H. J., Shin, D. J., Lee, J. W., Kim, D. H., Lee, J. H., Kim, B. G., Kim, T. J., Lee, Y. K., Suh, E. K., Kang, M. S., Seo, W. J., Kim, J. J., Zhang, F., Su, S., & Youn, M. K. (2018).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DISA Journals: Overview of 2017 and Strategic Plans for the Futur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6(5), 83-90. <http://dx.doi.org/10.15722/jds.16.5.201805.83>
- Kleinert, S., & Wager, E. (2011). Responsible research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 position statement developed at the 2nd 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Singapore, July 22-24, 2010.

가정과삶의질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관세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교육치료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국제통상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법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상담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언어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유통과학회(KODISA) 논문투고규정(Guide for Authors)

한국유통과학회(KODISA) 연구부정행위 관리지침

한국유통과학회(KODISA) 연구윤리지침(Publication Ethics)

한국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인도학회 연구윤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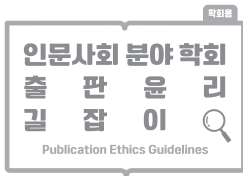
한국일본어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청소년학회 연구윤리규정

황희중. (2019). 2018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결과보고서-한국유통과학회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연구재단.



집필진

황희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유통과학연구 편집위원장)

김병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동아시아경상연구 편집위원장)

기획: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편집인

발행/인쇄일자: 2021년 6월 14일

발행처: 한국연구재단

편집/제작: 에코디자인 044-868-0054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042-869-6648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